

외국의 PL법제도 운영과 동향③

기술교육처장 정 연 해



목 차

1. 외국의 전반적 동향

2. 각국의 PL법 동향

2-1. 미국의 PL법

2-2. 유럽의 PL법

2-2-1. 영국의 PL법

2-2-2. 독일의 PL법

2-2-3. 프랑스의 PL법

2-2-4. 이탈리아 PL법

2-2-5. 네델란드의 PL법

2-2-6. 러시아의 PL법

2.3 일본의 PL법

2.4 중국의 PL법

● 제조자의 면책사유

제조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지만 다음의 여섯가지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되는 것으로 하여 제조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첫째,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이다. 예컨대, 판매를 위해 생산하였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결함 제조물에 의해 기업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으로서 이미 유통되어 사용된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의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던가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셋째, 그 제품이 판매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며 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제조,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넷째, 그 제품의 결함이 당국에서 정한 강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강제기준이라 함은 국가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 기준인) 제조방법을 규제하고 있고, 제조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결함 제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을 말하며, 각 가맹국은 그 판단에 따라 국내법으로 개발위험에 관해서도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다.

여섯째, 부품제조자의 경우에는 그 부품을 조립한 최종제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최종제품 제조자의 지시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 제3자·피해자의 과실 등

손해가 제품의 결함과 함께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피해자의 보호를 고려한 조항이다. 이 경우 제3자는 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므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자의 책임여부, 그 책임의 범위 및 구상권 등에 대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 손해의 범위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인적손해 및 재산손해이다. 인적손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배상액에 제한이 없으나, 각국은 책임총액의 제한을 옵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산손해의 경우 제품 자체의 손해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적인 사용·소비를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따라서 영업용 재산은 제외됨)에서 발생한 500 ECU(유럽통화단위) 이상의 손해에 대해

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품 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된다. 이는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해서 소액청구가 빈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자료 등의 무형손해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의 국내법에 그 취급을 위임하고 있다.

● 제소기간 및 소멸시효

피해자는 손해·결함 및 제조자의 신원을 안 날 또는 합리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손해의 원인이 된 제품이 유통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특약에 의한 책임제한 등의 금지

제조자는 피해자와의 특약에 의해 자신의 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없다.

제조자들간의 관계는 본 조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의 제한 또는 배제금지 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만 작용한다.

●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조자의 책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가맹국은 필요에 따라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품에 의한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액이 7,000만 ECU 이상이어야 한다. 즉 지침은 개발위험을 제조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대신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각 가맹국이 인적손해에 한하여 7,000만 ECU 보다 낮지 않은 범위에서 책임한도액을 제한하는 국내입법도 가능하다는 선택조항을 두고 있다.

● 제조물책임의 중복적용의 가능성

지침이 통보된 시점에 존재하는 계약상 또는 계약 외의 책임에 관한 법규정 혹은 특별책임제도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

는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각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자유로이 지침에 의해 제정되는 국내법, 계약책임법, 비계약책임법(불법행위법) 및 제조물 책임에 관한 특별책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지침에 근거하는 무과실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법에는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청구는 실익이 있다. 예를 들면, 인적손해에 있어서 위자로 청구, 동일결함·동종품목에 의한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총액제한, 영업이나 직업상의 물건 또는 공적인 물건의 배상대상으로부터 제외, 제1차 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의한 피해, 결함제조물 자체의 피해, 물적 손해에 있어서 500ECU의 자가부담금, 판매업자나 수리업자의 책임추궁,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경과후의 소 제기 등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청구권은 그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영국의 PL법

영국은 EU지침에 따라서 1987년 5월 15일에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법 제1장이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조물책임에 대한 종래의 계약책임이나 과실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적용된 책임원칙도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무과실 책임과 함께 제조물 책임의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 무과실책임의 원칙

종래 영국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자나 공급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법에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는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자는 그 손해

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해 제조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한 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시키고 있다.

● 제조물의 정의

제조물이라 함은 동산 및 전기를 말하며, 구성부품이나 원재료 등 다른 제조물을 구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농업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수렵물, 제1차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책임주체

제조자는 EU지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업자 및 스스로 제조로 표시한 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일정한 부분의 공급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 결함

제조물의 안전성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여기서 안전성이라 함은 해당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전성 및 재산상 피해의 위험과 관련한 안전성, 그리고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의 위험과 관련된 안전성을 포함한다. 또한, 동조는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가능성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제조물의 판매방법, 목적, 형태, 표시의 사용, 지시·경고 해당 제조물에 대해 해당 제조물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항, 해당 제조물이 제조자로부터 타인에게 공급된 시점 등이다. 그러나 그 시점 이후에 공급된 제조물의 안전성이 문제의 제조물의 안전성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손해

손해란 사망, 신체 상해,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한다. 그러나 제조물에 부합된 제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해를 포함해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사적인 사용, 점유, 소비가 의도되어 있는 제조물의 사적인 사용, 점유, 또는 소비 시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275파운드 이하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자는 면책된다.

● 항변

제조자에게 인정되는 항변사유로는 ㉔ 결함이 법령에 근거해서 과해진 요건 또는 공동체 의무의 준수에 기인하는 경우, ㉕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㉖ 제조물 공급 그 자체가 영업으로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이익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㉗ 결함이 관련 시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㉘ 관련시점의 과학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서 분쟁 제조물과 동종의 제조물의 제조자에 대해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의 발견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㉙ 결함이 2차 제조물의 제조자의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 등이 있다. 상기 ㉔의 개발위험의 항변은 “과학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서 분쟁 제조물과 동종 제조물의 제조자에 대해 존재하는 결함의 발견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EU지침에 비해서 제조자의 입장을 보다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소멸시효 및 제소기간

제조물책임 소송은 소송원인이 발생한 날 또는 원고가 소송원인이 되는 사실, 피해가 결함에 기인한다는 사실 및 피고에 대해 인식할 날 중 후에 도래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다.

● 책임배제금지

어떠한 계약조항이나 통지 또는 규정으로써 제

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자의 특별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2.2 독일의 PL법

1989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독일의 제조물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계약책임을 묻는 방법과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법이 가능했다.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무 위반을 추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조물책임은 거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다. 법원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판례에 의해 과실의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전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상당히 근접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의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특히, 약업 분야에서 제조자에게 엄격책임을 지우는 움직임이 고조되어 그 결과 1976년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85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이 EU 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가맹국은 EU지침에 따라 1988년 7월 30일까지 국내법을 정비해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할 의무가 지워졌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1988년 6월 9일 연방의회에 “결함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제조물책임법)안”이 연방정부안으로 제출되어 1989년 12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EU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개발위험의 증명은 제조자 측에서 해야 함),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두는것이 독일에서의 종래의 방식이라고 해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또한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에 관한 EU지침 선택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제1차 농산물, 축산물, 양봉 생산물, 수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전기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결국 EU 지침과 동일하다.

● 물적 손해에 대한 면책액

물적 손해의 경우 최종 소비자는 그 피해를 구제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결함 있는 제조물, 그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결함 제조물에 의해 다른 재물이 파손되고 또한 그 다른 재물이 일반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재물인 경우에만 제조자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 물적손해의 경우 피해자는 1.125마르크까지의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들 규정은 EU지침을 따른 것이다.

● 책임한도액

동일 결함을 가진 동종 제품에 의해 인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1억 6,000만 마르크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배상액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이 규정도 EU지침을 따른 것이다.

●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 제조자는 1976년 개정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품 분야를 제외하고 책임을 면한다.

● 의약품책임 등

1976년 개정 약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약품에 관한 한 개발위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본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위자료 및 기타 관련 규정

위자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 전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려는 취지이다. 또 사망 및 신체상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명기한 것,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정기금액에 의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타 무과실책임의 원칙, 제조자의 면책사유, 입증책임, 결함의 판단기준, 제조자의 범위, 연대책임, 책임경감, 특약에 의한 책임제한 등의 금지, 소멸시효 및 청구권의 소멸, 제조물책임의 복선적 구조등은 EU지침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2.2.3 프랑스의 PL법

프랑스는 EU제조물책임 지침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의 국내규정을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최근까지도 입법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1993년 EU법원으로부터 EU지침에 기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라는 판결을 받고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어 지난 1998년 4월 30일에 결함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민법개정 정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998년 5월 5일

원로원에서 가결되고 대통령이 5월 19일 서명하여 5월 21일에 관보에 발표되었다.

프랑스의 제조물책임 규정은 제조물책임을 민법상의 규정으로 하는 한편, 그 규정을 민법 체계상 비계약적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 제4장의 다음에 규정하여 제조물책임 규정의 적용영역이 계약적영역과 불법행위영역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합 제조물책임을 규율하는 프랑스민법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제조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가 있다. 인적손해는 신체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며 물적 손해는 결합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그런데 본 법은 물적 손해를 개인적인 사용·소비를 위한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손해의 범위가 EU지침보다 넓다. 일본과 미국이 이러한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EU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손해에 대한 최고 배상한도액과 물적 손해에 대한 최저 배상한도액등의 배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 제조물의 범위

본 법은 그 적용대상인 제조물에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동산과 전기는 물론 1차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있다.

이에 대해 EU지침은 1차 농산물 및 축산물 제조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에게 위임하고 있다(EU지침 제2조·제15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미국 등이 1차 농산물 및 축산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로부터의 산물이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1996년 6월 이들을 제조물이라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EU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민의회 제1독회에 제출된 백그 보고서에서도 ㉔이들은공업제품 또는 상품교환에 관한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인체, 그 구성요소, 그 산물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음), ㉕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보다 후에 성립한 시판 의약품에 관한 EU지침이 사람이 혈전, 혈장, 혈액세포를 그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㉖ EU지침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보호가 현재의 프랑스 판례 및 보상제도(히드 면역부전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혈자 및 혈우병 환자를 구제하는 보상제도)보다 후퇴하는 점을 들어 이들을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로원 제1독회는 ㉗ 피해자는 종래의 책임제도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㉘ EU지침이 가져오는 책임법의 단순화라고 하는 장점을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미치지 않음 이유가 없다는 점, ㉙ 히드 면역부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에서는 이미 보상제도가 있지만, 그 밖의 C형 감염 등의 경우도 있고, 장래에는 각종의 치료에 기인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이들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 유통시점에서의 의의

EU지침은 '유통시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본 법은 이를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양도한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을 단 한 번만 유통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해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회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원로원의 입장이 대립했으나, 결국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한 번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유는 모든 공급자에게도 제조자

와 동일한 요건 하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로 볼 때 유통상 각 공급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제조자가 양도한 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시점은 제조물을 유통시키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면 책임이 소멸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 시점에 대한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이다.

- 판매자·임대인·기타 공급자의 책임, 본 법에서 판매인·임대인 기타 모든 사업자로서의 공급자는 제조자와 동일한 요건 하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프랑스 판례법은 제조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상의 판매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켜 온 귀결로써 게스탄 초안 이후 일관하게 주장되어 왔다. 다만, 임대인 중 금융목적의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93년 법안에는 ‘리스업자 또는 리스업자와 동일시되는 임대인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없었지만 원로원 제1독회에서 이 구절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EU지침은 제조자를 제1차적인 책임주체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

● 면책특약의 금지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EU지침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EU지침에서는 영업용 재산에 관한 손해는 배상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본 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간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은 사업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간의 면책특약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발위험의 항변

본 법은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면서, ㉞

손해가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해 생긴 경우 ㉞ 제조물을 유통시킨 지 10년 이내에 결함이 밝혀진 경우에, 그 제조자가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한 손해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한 손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체에서 유래하는 의약품에 의한 손해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고, 나아가 사람의 혈액 그 자체의 수혈이나 조직·장기의 이식과 같은 경우에도 본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 법의 심의과정에서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대해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찾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법은 제조물책임법에 공중위생법적 성격을 혼합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점은 이미 제조물책임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흥미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 유통 후에 결함이 판명된 경우

제조물의 유통 후 10년 이내에 밝혀지게 된 결함에 대해, 제조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개발 위험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제조물의 유통 후에도 제조자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EU지침에는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게스탄 초안 이후 인정되어 온 것으로 소비자법 전에도 이러한 입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1993년 법안에서 ‘적절한 조치, 특히 공시, 점검을 위한 신청, 제조물의 회수’로 예시되고 있고, 원로원 제1독회에 제출된 위원회 보고서는 이 예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